

사건번호	2022허2271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22원96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균열 저감형 콘크리트 보수 모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기각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의 발명을 특허출원(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사관과 동일한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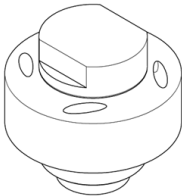
● 판시 요지

-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구성성분 및 그 함량에 관하여 '고로 슬래그 분말 7중량%, 무수석고 2.0중량%, 재분산 수지 1.0중량%, 수축 방지 첨가제 0.2중량% 및 섬유보강재 폴리프로필렌 섬유 0.2중량%'로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함량을 '고로 슬래그 미분말 2 내지 20중량%, 석고 0.5 내지 15중량%, 아크릴 개질 분말수지 1 내지 5중량%, 수축 방지제 0.1 내지 2중량%, 섬유보강재 0.1 내지 5.0중량%'로 범위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이하 '차이점 4'라 한다), 시멘트와 골재와의 모르타르 수분 유지를 위해 나노 펄프 셀룰로오스 1.0중량%를 포함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을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5'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 1은 펜틸글라이콜의 순도를 99%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6'이라 한다).
- (2) 우선, 차이점 4와 6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과 달리 명세서에는 이와 같은 각 성분에 대한 함량을 특정한 수치로 한정된 것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확인할 근거가 없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수축 방지 첨가제는 순도 99%의 네오펜틸글리콜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1에서는 수축 방지제로서 네오펜틸글리콜(Neopentyl glycol)을 더 포함할 수 있다고 하며, 네오펜틸글리콜은 백색 결정체 100%로 이루어진 플레이크(flake)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네오펜틸글리콜의 순도를 99%로 한정된 점에도 별다른 기술적 의의가 없으므로 선행발명 1이 비록 모르타르의 구성성분, 수축 방지 첨가제의 종류를 개시하고 있을 뿐 모르타르의 함량, 수축 방지 첨가제의 순도를 명시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모르타르 조성물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시공 환경, 성능, 요구조건, 단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모르타르의 구성성분 및 함량, 수축 방지 첨가제의 종류와 순도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구성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통

상의 창작범위에 속한다.

- (3) 차이점 5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나노 펄프 셀룰로오스'는 시멘트와 골재간 결합을 유도하고 모르타르 내부에 수분을 축적하여 건조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나노 펄프 셀룰로오스'를 사용하는 기술적 의의가 건조 수축을 억제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셀룰로오스 섬유를 콘크리트의 수축 저감제로 사용하고, 셀룰로오스 섬유의 나노화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발전경향이라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인데, 선행발명 1은 모르타르 조성물이 수축 방지제로서 네오펜틸글리콜(Neopentyl glycol) 0.1 내지 2중량%를 더 포함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1은 모르타르 조성물에 수축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는 성분을 포함할 동기가 충분하고,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모르타르 조성물에 여러 가지 수축 방지제 중에서 가격, 성능 등 각 재료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를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재료 중 하나인 나노 펄프 셀룰로오스는 선행발명 1의 네오펜틸글리콜과 동일하게 수축 방지 기능을 가지는 구성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수축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보수 모르타르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콘크리트 보수 모르타르의 시공 환경, 요구성능, 제조 단가 등을 고려하여 공지된 기술인 셀룰로오스 섬유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구성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통상의 창작범위에 속하고, 천연섬유를 가공. 처리하여 나노화하는 콘크리트 보수 모르타르 분야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발전경향까지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콘크리트 보수 모르타르에 나노 셀룰로오스 형태로 포함할 수 있고, 또한 선행발명 2의 명세서는 저급 알코올알킬렌옥사이드계나 글리콜에스테르계의 수축 저감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수축 저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축 방지제 중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나노 셀룰로오스 섬유'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진보성, 균열 저감형 콘크리트 보수 모르타르 및 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

사건번호	2021나1596	사건명	특허권침해금지청구등
제1심판결	수원지법2020가합17200	제1심결과	기각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권리유형	특허, 디자인	권리명칭	급속동결기의 서리제거장치용 회전노즐 
선고일	2022. 10. 28.	선고결과	항소기각



피고 제품()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
리범위에도 속하지 않아 원고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인용판결임

키워드: 특허, 디자인, 문언침해, 균등침해, 급속동결기의 서리제거장치용 회전노즐

사건번호	2021허4027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20당2337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보호필름 부착장치
선고일	2022. 10. 28.	선고결과	기각

이 사건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고 볼 수도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8. 4.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0당2337호로 심리한 다음, 2021. 6. 7. “이 사건 발명은 비교대상 발명 1, 2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선출원 발명과 이 사건 발명의 발명자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4, 6항 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1은 곡면진 코너가 형성되는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5는 ‘보호필름의 타측이 상하방향으로 탄성지게 지지’될 수 있는 것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차이점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보호필름 부착시 기포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점, 그를 위해 구성요소 5가 구비되어 있는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그러한 구성이 전혀 없는 점, 선행발명 2에는 위 효과를 위한 문제의식 내지 기술사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이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 2는 위 차이점 1과, 구성요소 4의 제1그리퍼는 ‘보호필름의 일측을 고정’시키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2의 다우웰핀은 ‘탄성박판의 일측을 고정’시키는 점(차이점 2), 구성요소 5의 제2그리퍼는 ‘보호필름의 타측이 상하방향으로 탄성지게 지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2의 베어링부는 ‘탄성박판의 타측이 탄성지게 지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차이점 2,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작용효과를 가지는데, 선행발명 2에 그러한 문제의식, 기술적 사상이 없는 점,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가 구성요소 4, 5의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더라도 같은 작용효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변형하면 선행발명 2의 기술적 의의를 상실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2로부터 극복할 수 없다. 이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 4는 위 차이점 1과, 구성요소 5의 경우 제2그리퍼가 하우징의 일측에 분리하여 설치되며, 보호필름의 타측이 ‘상하방향’으로 탄성지게 지지될 수 있는 것인데 비하여, 선행발명 4는 ‘헤드 및 아암’이 베이스에 일체로 설치되며, 부착 시트의 타측이 ‘대각선방향’으로 탄성지게 지지되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차이점 2 중 보호필름의 타측이 ‘상하방향’으로 탄성지게 지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성요소 5의 상하방향은 선행발명 4의 대각선 방향과 다른 점, 그로 인하여 양 발명은 효과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4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선출원 발명의 발명자와 이 사건 발명의 발명자가 동일하여 이 사건 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 보호필름 부착장치

사건번호	2022허1445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20당2478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보호필름 부착장치
선고일	2022. 10. 28.	선고결과	기각

이 사건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8. 1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0당2478호로 심리한 다음, 2021. 12. 9.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2021허4027 판결 참조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보호필름 부착장치

사건번호	2022허1469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20당2479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보호필름 부착장치
선고일	2022. 10. 28.	선고결과	기각

이 사건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2020. 8. 1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0당2479호로 심리한 다음, 2021. 12. 9.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2021허4027 판결 참조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진보성, 보호필름 부착장치

사건번호	2022허1377	사건명	권리범위확인(실)
심판번호	2021당2129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실용신안	권리명칭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선고일	2022. 10. 28.	선고결과	인용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의 확인대상고안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고,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확인대상고안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7.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1당2129호로 심리한 후, 2022. 1. 4.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이어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제5항 및 제6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과 원고가 실시하는 발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안의 명세서상, 찐 갑각류가 보온박스에 수납되기 전의 액체 용기의 열용량(비열, 부피 등) 및 수납 시 온도는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주요 구성인 점,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의 알루미늄 캔 온도 '40℃ 이하(내외)' 또는 실온'은 위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보정 후의 확인대상고안의 알루미늄 캔 온도 '40℃ ~ 68℃'는 일정 온도 범위에서는 위 기술적 과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정 전후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과제 달성 여부가 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보정 전후로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은 수납공간 부피와 수납된 찐 갑각류의 중량, 액체 용기의 부피, 90분 경과 후 내부온도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확인대상고안 보정이 적법하더라도, 보정 전후의 확인대상고안은 기능 및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보정 후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기도 하고 속하지 않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정된 확인대상고안 역시 이 사건 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나아가 보정 전, 후의 확인대상고안은 모두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지변경된 이 사건 보정 후 확인대상고안을 대상으로 권리범위의 속부를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키워드: 실용신안, 등록무효, 확인대상고안 특정, 보정, 요지변경

사건번호	2022허2295	사건명	등록취소(상)
심판번호	2020당2247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발할라
선고일	2022. 10. 28.	선고결과	인용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7.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2247호로 심리한 다음, 2022. 2. 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취소대상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각종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염병열을 통하여 채준석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주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채준석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뷔페식당업'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일(2020. 7. 24.)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불사용취소, 묵시적 통상사용권 설정

사건번호	2022허2769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21당2508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발가락 덧버선
선고일	2022. 10. 28.	선고결과	기각

이 사건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8. 2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21당2508호로 심리하여 2022. 3. 15.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4 및 7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4, 7 및 10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4, 7 및 11의 결합에 의하여 각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는, 구성요소 1은 편직기를 이용하여 밴드부를 직조하고(차이점 1), 고무사를 추가하여 탄력부를 직조하는 반면(차이점 2), 선행발명 2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다는 점, 구성요소 2는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 중 선택된 하나만 독립되는 발가락 공간을 형성하는 발가락부를 더 포함하는 반면, 선행발명 2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을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2는 선행발명 2로부터, 차이점 3은 선행발명 4, 7을 결합함으로써 각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이 사건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발가락 덧버선

사건번호	2021허63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심판번호	2020당1335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다기능 스마트폰 케이스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기각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발명과 문언상으로 동일하지 않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4.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은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결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 3, 5

구성요소 3은 제1패널의 후면에 제1태양광전지판을 구비하고, 구성요소 5는 제2패널의 내부에서 좌측으로 슬라이딩되도록 슬라이딩패널 및 그 전방에 제3태양광전지판이 형성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위의 '제1, 3태양광전지판 및 슬라이딩패널'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상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3, 5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문언상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제4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

1) 제4항 발명의 과제해결원리

제4항 발명은 스마트폰을 케이스에 넣고 제1, 2패널을 절첩한 상태에서 똑바로 놓아 두어도 제1태양광전지판에 의하여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폰을 케이스에 넣고 제1패널을 펼쳐 사용하는 상태에서도 제3태양광전지판에 의하여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기술사상의 핵심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확인대상발명이 제4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였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은 제2부분에 스마트폰이 장착되는 경우 제2부분의 전방 하단에 구비된 통신 및 전원 단자를 통하여 제1부분에 구비된 디스플레이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태양광전지판 및 이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구성 자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태양광전지판에 의하여 스

마르폰이 충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4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구현되어 있지 않고 제4항 발명과 같은 과제해결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제4항 발명과 문언상으로 동일하지 않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균등관계, 발명의 권리범위, 다기능 스마트폰 케이스

사건번호	2021허5839	사건명	등록취소(상)
심판번호	2020당475	심판결과	인용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BLACK HOLE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기각

등록상표의 경우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 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2. 1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는 해먹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이 계속중이던 중 원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등록상표권에 관한 상표권을 이전받고 소송에 인수참가하였다.

● **판시 요지**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1. 30. 박영자와 사이에 2024. 11. 29.까지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박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해먹을 판매하였는데, 사이트에는 'BLACK HOLE'이 표시되어 있고, 제품의 제조연월이 2017. 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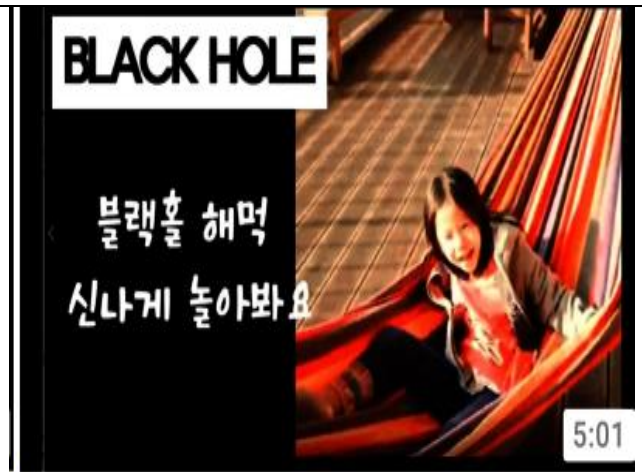
또한 원고는 2019. 10. 27.경 '여행하는 딸부자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래와 같이 원고가 판매하는 해먹을 소개하고, 위 제품과 관련하여 광고 문구와 등록상표를 표시하였다(갑 제13호증의 2).

3)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및 통상사용권자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7년부터 2019년 무렵까지 '해먹'을 판매하면서 이를 위한 광고 등에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등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9호증 5면 발췌]



[갑 제13호증의 2 발췌]

2.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및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상표의 계속적 사용, **BLACK HOLE**

사건번호	2021허5907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21당1947	심판결과	기각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전동침대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인용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 개요

1. 선행 확정 심결

피고는 2020. 7. 29. 제2, 3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제2, 3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제2, 3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1. 쟁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라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효과에 의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제2, 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새롭게 제출된 선행발명 1, 2, 4가 선행 확정 심결의 결론을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제 2 항 발명과 선행발명 1 의 구성 대비

구성요소 1 은 등판, 둔부판, 허벅지판, 다리판이 경첩으로 연결되어 접철이 가능한 반면, 선행발명 1 의 대응 구성요소는 피벗식으로 연결되어 골격만 갖추고 있을 뿐 넓은 판으로 구성된 구조가 아니고 접철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구성요소 2 의 경우, 선행발명 1 의 대응 구성요소는 제 1 프레임, 지지 프레임, 제 2 프레임, 보조프레임이 서로 연결되어 일체로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쇼바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구성요소 3 의 경우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1 의 대응 구성요소의 구성은 둔부판(지지 프레임의 횡방향)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구성과 형태에 차이가 있고(차이점 3), 제 1, 2 전동실린더의 위치에도 차이가 있다(차이점 4).

나. 차이점에 대한 분석

1) 차이점 1 의 용이 극복 여부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의 구성에 적절한 힌지를 선택하여 각 베드들이 완전히 펼쳐지거나 겹쳐지는 구성을 쉽게 착안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차이점 2, 3의 용이 극복 여부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3) 차이점 4의 용이 극복 여부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개시된 구성들과 상이하므로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4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것이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일사부재리의 원칙, 발명의 진보성, 전동침대

사건번호	2022허1018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21당2019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파일럿 체크 밸브가 내장된 금형 고정용 클램프 장치 및 구동방법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기각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1.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1, 4, 5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청구항 1, 4, 5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1. 11. 12. 원고의 정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정정을 인정하고, 제1, 4, 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1.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제1항 발명은 파일럿 체크 밸브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직접 수직 방향으로 승하강 시키지만, 선행발명 1은 두 개의 오일챔버와 그 사이에 설치된 피스톤, 경사면 등의 구성을 이용하여 피스톤을 좌우로 이동시키고 피스톤의 좌우 이동에 따라 로드가 수직 방향으로 승하강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양 발명은 피스톤의 형상 및 운동 방식, 파일럿 체크 밸브의 유무, 유압의 작동 및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세부 구성요소들과 그 결합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또한 제1항 발명 구성요소 3은 피스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커버를 구비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이와 동일한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나. 차이점 분석

1)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성

제1항 발명은 유체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클램프의 상태를 유지시켜 안정성을 높이고, 금형을 보다 견고히 파지할 수 있게 하며, 실린더 내부 구조를 간단히 하여 클램프 장치를 소형화한다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2) 선행발명 2의 구성

선행발명 2는 ㉞ 입구포트를 통해 유입된 유체가 입구포트와 밸브를 연결하는 유로를 거쳐 파일럿

작동 체크 밸브를 열고 열린 밸브를 통해 출구포트 및 실린더의 전진포트를 거쳐 실린더 하부에서 피스톤을 밀어 올려 상승시키고 그 상태를 그대로 고정시키며, ㉠ 수축포트와 파일럿포트로 공급된 유체가 각각 실린더의 피스톤을 하방으로 밀어 내거나 파일럿 작동 체크 밸브를 열어 피스톤의 하방에서 지탱하고 있던 유체를 방출시켜 피스톤을 하강시킨다는 점에서 제1항 발명과 구성 및 작동원리, 기술적 효과가 동일하다.

3) 선행발명 1, 2의 기술적 과제 및 해결수단

선행발명 1은 크게 파지 및 해제 기능을 하는 클램프 수단 관련 구성과 그 구동을 위한 유압실린더 관련 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행발명 1의 유압실린더 관련 구성과 선행발명 2의 파일럿 작동 체크 밸브 구성은 모두 유압실린더의 피스톤을 상승시키고 상승된 상태를 유지시키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술 분야 내지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다.

4) 결합의 용이성

선행발명 1 중 구동을 위한 유압실린더 구성 부분을 선행발명 2의 파일럿 작동 체크 밸브로 치환하면, 실린더의 승하강 운동을 레버의 회전 운동으로 전환하여 금형을 파지, 해제할 수 있고, 상승된 실린더 상태를 유지시켜 금형을 파지 상태로 유지하며, 실린더 내부 구조를 단순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하다.

2. 제4, 5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제4, 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클램핑 장치에 내재된 기술 사상을 구동방법 측면에서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제1, 4, 5항 발명은 모두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발명의 진보성, 파일럿 체크 밸브가 내장된 금형 고정용 클램프 장치 및 구동방법

사건번호	2022허2073	사건명	등록취소(상)
심판번호	2021당524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각하

소의 피고는 심결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 개요

김찬수는 2021. 2. 18.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제32류에 대하여 그때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인삼이 함유된 음료용 야채주스' 부분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1. 19. 원고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인삼이 함유된 음료용 야채주스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인삼이 함유된 음료용 야채주스 부분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김찬수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이 사건 소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그 피고적격은 심결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 한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심결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상표의 계속적 사용, 피고적격,

사건번호	2022허3243	사건명	등록취소(상)
심판번호	2021당1666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amaranth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기각

등록상표는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6. 1.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취소심판청구를 2021당1666호로 심리하여, 2022. 3. 23. 등록상표는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여부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2011년 이전부터 “A healing health care”라는 상호로 종합건강관리업을 영위해 왔다.
- 2) 원고는 2011. 3. 경 광고용 팜플렛에 “Amaranth”를 표시하였다.
- 3) 원고는 2011. 3. 경 명함에 “Amaranth”를 표시하였다.
- 4) 원고는 튜빙 운동기구에 “Amaranth”를 표시하였다.
- 5) 원고는 2018. 5. 3.부터 2019. 4. 30. 까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43-53 지층을 임차하였다.

나. 검토

원고가 위 명함, 튜빙 운동기구에 “Amaranth”를 표시한 시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등록상표는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상표의 계속적 사용, amaranth

사건번호	2022 허 1820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9 당 3230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의류용 발향 태그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기각

1 항 정정발명은 청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고,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2 내지 15 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항 등록발명이 선행발명 1, 2, 4, 5,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2, 5, 6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1항 등록발명에 기재된 '상기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을 '상기 여백과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으로 정정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9당3230호로 심리한 후, 위 정정청구를 인용하고, 1항 등록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소송 계속 중 1항 등록발명에 "상기 여백과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 및 "상기 봉투의 일면에는 절개선에 의해 제거되는 제거팁으로 형성되는 발향공이 형성된"이라는 구성을 부가하는 등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심판청구 사건을 2021정111호로 심리한 후,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이 심결은 확정되었다.

● 판시 요지

원고는 '1항 정정발명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밀"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재가 불비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 1항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의하면, 발향 태그는 개구부를 밀봉하기 위해서 덮개에서 연장된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 구비된 접착층에 의해 봉투의 개구부를 밀봉하게 형성되는데, 봉투를 제작하는 크라프트지는 투과성이 우수하여 별도의 발향공을 형성하지 않아도 은은한 발향 효과를 갖는다. 즉, 발향 태그를 형성하는 봉투는 덮개가 개구부 하단과 개구부 상단(여백)에 형성된 접착층에 접착됨으로써 밀봉된 상태를 갖게 되며, 별도의 발향공 없이 크라프트지의 특성(투과성)을 이용하여 은은한 발향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그리고, 1항 정정발명에는 크라프트지에 라미네이트층을 형성하여 기밀 유지를 하며, 향이 소실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재가 있다. 즉, 라미네이트층은 앞서 본 크라프트지를 통해 은은하게 발향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향 태그는 별도의 발향공 없이는 크라프트지를 통한 발향이 불가능하며, 봉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라미네이트층이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시예에서도 '덮개에서 연장된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 구비된 접착층에 의해 봉투의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은 여전히 밀봉된 상태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보인다. 결국, 향이 소실되지 않도록 봉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라프트지에 라미네이트층을 형성하는 구성과 더불어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3) 그리고, 1항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상기 봉투의 내공간에 발향제가 투입된 상태에서 기밀이 유지되게 덮개를 덮어 접착하여 밀봉토록 하고, 밀봉된 상태에서 접착된 덮개에 걸이끈을 걸어줄 수 있는 연결공을 구비하면서도 기밀이 유지토록 한 것이다.” 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이 기밀을 유지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이상과 같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면 1항 정정발명의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이 개구부에서 향이 소실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점과 아울러, 구체적으로 덮개가 개구부 하단과 개구부 상단(여백)에 형성된 접착층에 접착됨으로써 밀봉된다는 기술적 원리를 갖는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특수한 지식 없이 그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 따라서 1항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 5) 위에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1항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의해 알 수 있는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은 개구부의 기밀을 의미하는 것이며, 1항 정정발명의 “상기 덮개와 개구부가 형성되는 사이에는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여백을 구비”하고, “상기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는 각각 접착층을 형성하여 후가공으로 상기 덮개가 상기 접착층과 접착되면서 봉투의 개구부를 밀봉토록 형성”되는 구성은 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과 같은 것이므로 1항 정정발명에는 밀봉(기밀)을 유지하는 기술적 수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 6) 나아가, 1항 정정발명에는 이와 더불어 “봉투의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트층이 형성되고”, “상기 봉투의 일면에는 절개선에 의해 제거되는 제거팁으로 형성되는 발향공이 형성되고”, “여백과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의 덮개에는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공이 구비”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각 구성요소는 발향 태그의 밀봉(기밀)이라는 관점에서, ① 라미네이트층은 봉투를 통한 은은한 발향에 의한 향의 소실을 막고 ② 발향공은 발향이 필요한 경우 제거팁을 제거하여야 형성되는 것인데, 제거팁을 제거하기 전에는 발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밀봉 상태를 유지하며, ③ 연결공은 밀봉된 상태에서 접착된 덮개에 걸이끈을 걸어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따라서, 1항 정정발명에는 덮개가 여백과 개구부 하단의 접착층에 의해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이 위 구성요소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봉투의 밀봉(기밀)을 유지하는 기술적 수단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차이점 1, 3, 4, 5는 1항 정정발명의 절첩가능한 덮개,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여백, 덮개가 여백 및 개구부 하단에 형성된 접착층에 의해 봉투의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조 및 여백과 덮개가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에 구비된 연결공에 대응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12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차이점 1, 3, 4,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 1) 선행발명 14와 차이나는 1항 정정발명의 구성은 라미네이트층을 제외하더라도 봉투의 개구부와 연결공이 형성된 부분을 밀봉하여 해당 부분으로 향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대비되는 선행발명 14는 봉투의 개구부가 밀봉된다고 보이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도 그러한 밀봉을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선행발명 14는 1항 정정발명이나 선행발명 12와 같이 향의 소실을 방지하는 구성이 필요한 발향 태그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봉투로서 개구부의 밀봉을 위해 발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봉투의 개구부 밀봉에 관해서는 아무런 인식이 없다. 또한, 선행발명 14의 헤더부에 개시된 구멍은 단순히 진열장 등

에 매달기 위한 구멍으로 보일 뿐이며, 1항 정정발명의 연결공과 같이 헤더부의 구멍 주변을 밀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선행발명 14의 플랩을 형성하기 위해서 플랩 시트를 후측면 시트에 용착수단으로 장착하든, 접이가공다흔, 1항 정정발명의 여백에 대응되는 부분에는 개구부의 상단과 플랩은 용착이나 접착면에 의해 밀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구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밀봉이라는 효과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 해 보면, 비록 선행발명 14에 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3, 4, 5에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로부터 1항 정정발명과 차이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도출하는 것이 쉽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선행발명 13은 슬릿을 밀봉하는 것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사용자가 슬릿을 개방 및 폐쇄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선행발명 13 또한 방향장치 자체의 밀봉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발명 15에는 1항 정정발명의 덮개, 여백, 접착층에 대응되는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차이점 1 내지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2 내지 15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의류용 발향 태그, 청구항 기재 요건 인정,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인정,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인정,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 인정, 진보성 인정, 밀봉, 기밀 유지, 발향, 발향공, 덮개

사건번호	2021 허 1851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심판번호	2019 당 3189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의류용 발향 태그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기각

1 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1 항 정정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1 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의류용 발향택”은 특허 제 1932849호의 청구범위 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 계속 중 1항 등록발명에 “상기 여백과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 및 “상기 봉투의 일면에는 절개선에 의해 제거되는 제거팁으로 형성되는 발향공이 형성된”이라는 구성을 부가하는 등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심판청구 사건을 2021정111호로 심리한 후, 피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

● 판시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밀”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2022허1820 사건 참조), 1항 정정발명에는 덮개가 여백과 개구부 하단의 접착층에 의해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이 확인구성 2, 5, 6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봉투의 밀봉(기밀)을 유지하는 기술적 수단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항 정정발명의 확인구성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지는 아니하다.

정정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① ‘봉투의 좌우측변과 하측변은 막혀지고 상측변은 개구된 개구부가 형성되며, 개구부가 형성되는 일측면으로 연장되어 절첩가능한 덮개를 포함하는 봉투 형태로 구성되어 발향 태그의 제조가 용이하고, ②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여백,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의 접착층, 덮개가 여백 및 개구의 하단과 각각 접착되면서 개구부를 밀봉하며, 여백과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의 덮개에 연통되게 연결공을 구비함으로써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공을 형성하면서도 봉투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봉투의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트층을 형성함으로써 향의 소실을 막아 원가 절감 및 장기 보관이 가능하게 하는 의류용 발향 태그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의류용 발향택에 관한 것으로 1항 정정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으로부터 ① 봉투 형태로 제조가 용이하고, ② 덮개가 접착층에 의해 여백 및 개구부의 하단에 각각 접착되어 개구부를 밀봉하며,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공을 발향택에 형성하면서도 봉투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라미네이트층을 통해 향의 소실을 막을 수 있어 장기 보관 및 원가절감이 가능한 의류용 발향택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1항 정정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동일하다. 1항 정정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공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인대상발명도 봉투 형태로 발향택을 제조함으로써 제조의 용이성이 있다고 충분히 예측되고, 의류에 걸 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하면서도 봉투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 및 라미네이트층을 형성하여 향 의 소실을 막아 원가 절감 및 장기 보관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1항 정정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접착층의 형성 위치에만 차이가 있는데, 접착층의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접착층으로 접 착대상이 되는 부분(뒷개 또는 여백 및 개구부의 하단) 중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하여 접착층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기술적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인구성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

키워드: 특허, 권리범위확인, 의류용 발향 태그, 기밀 유지, 밀봉, 청구범위 해석, 균등관계 인정, 걸이끈, 라미네이트층, 봉투, 연결공, 발향택

사건번호	2021 허 5679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21 당 432	심판결과	일부인용 1, 3, 8~11, 13항 : 인용 4, 14항 : 각하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일체형 면도날 및 이를 이용한 면도기 카트리지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기각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1, 3, 8~11, 13 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발명 청구항 1, 3, 4, 8~11, 13, 14항은 비교대상발명 1~4(선행발명 1~4와 각각 동일하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청구항 4, 14항을 삭제하면서 그 수치한정 범위를 축소하여 1, 8항에 각각 병합하고, 또한 '중앙부가 돌출된'을 청구항 1, 8항에 각각 부가하여 커팅 에지의 형상을 한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5(선행발명 5)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에 의하여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청구는 적법하나, 정정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8~11, 13항은 비교대상발명 5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4, 14항은 정정청구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애초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커팅 에지의 중앙부와 커팅 에지의 양쪽 끝을 연결한 직선과의 거리'에 관한 수치범위는 '0.075~2.0mm'로서 이는 '0.1~2.0mm'인 경우뿐만 아니라 '0.075~2.0mm' 범위 내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정정청구의 정정사항 2 및 5는 명세서 기재 사항에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정청구가 정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성요소 5의 수치한정 범위는 그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수치한정에 대한 이유나 효과의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지부의 배면부 구성도 다른 구성과 연관되어 그 치수가 정해질 것이 자명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재불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명세서 기재불비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을 위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행발명 1에는 절삭 부재의 강성, 보우 및 스위프로 인한 곡면 형상이 면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절삭 부재의 강성이 클수록 보우 및 스위프로 인한 곡률이 작을수록 면도 성능이 향상된다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다. 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면도날(절삭 부재)의 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면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 발명의 과제가 공통되고 다만 커팅 에지의 중앙부와 커팅 에지의 양쪽 끝을 연결한 직선과의 거리, 즉 위 차이점의 수치한정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5의 수치범위(커팅 에지의 중앙부와 커팅 에지의 양쪽 끝을 연결한 직선과의 거리가 0.1mm 내

지 2.0mm)와 선행발명 1의 이에 대응되는 구성의 수치범위(약 0.086mm)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①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대응 구성의 수치(약 0.086mm)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 당시의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범위에는 중복된다는 점,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와 같은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며, 정정청구로 인하여 구성요소 5가 선행발명 1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한 기술적 및 효과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차이점의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을 기초로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일체형 면도날, 면도기 카트리지, 정정청구 적법, 명세서 기재불비 부정, 진보성 부정, 수치한정 발명, 면도기, 절삭 부재

사건번호	2022 허 1162	사건명	등록취소(상)
심판번호	2020 당 2270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ALFA LAVAL AALBORG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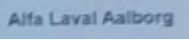
● 사건 개요

피고는 등록상표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3년 간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9류의 'apparatus for analyzing flue-gas' 등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인정사실 및 아래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알파 라발 올보르크 에이에스에 의하여 국외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 1, 3이 그 포장에 표시된 '컨트롤 패널(Control panel)' 및 '공통 패널(Common panel)'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각각 삼성중공업 및 STX 해양조선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되었다는 사실 및 위 '컨트롤 패널(Control panel)' 및 '공통 패널(Common panel)'은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하나인 '보일러 제어기구'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그 통상사용권자인 알파 라발 올보르크 에이에스에 의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보일러 제어기구'에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의 상호는 'ALFA LAVAL'에 회사의 기업형태를 나타내는 'CORPORATE AB'라는 문구가 부가된 것이고, 알파 라발 올보르크 에이에스 역시 'ALFA LAVAL'에 법인 소재지의 지명인 'Aalborg' 및 기업 형태를 나타내는 'A/S'가 병기된 것으로 양자 모두 그 상호에 'ALFA LAVAL'을 포함하는 점, 원고가 'ALFA LAVAL'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ALFA LAVAL CURVEFLOW' 등)를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FA LAVAL'은 원고 및 알파 라발 올보르크 에이에스 등이 속한 기업 집단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알파 라발 올보르크 에이에스는 원고가 그 소유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완전 자회사인 점, 등록상표는 알파 라발 올보르크 에이에스의 상호에서 기업 형태를 나타내는 'A/S'라는 문자 부분만이 빠진 것과 동일한 점, 원고가 알파 라발 올보르크 에이에스가 그 상호 및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 1, 3 등의 표장을 사용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ALFA LAVAL'이라는 문구를 그 상호에 포함하는 관련 회사들의 모회사로서 등록상표를 비롯하여 'ALFA LAVAL'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상표들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그 자회사인 알파 라발 올보르크 에이에스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등록상표(**ALFA LAVAL AALBORG**)와 비교하여 실사용상표 3()은 각 문구의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알파벳 소문자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알파벳으로 된 문자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것을 소문자로 변경하거나 소문자로 표시된 것을 대문자로 변경하는 것은 거래통념상 흔히 일어나는 변경으로서 이로 인하여 알파벳으로만 구성된

문자 상표에서 표장의 호칭이나 관념에 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변경은 거래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사용상표 3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한편 실사용상표 1(Alfa Laval Aalborg)은 실사용상표 3과 표장을 구성하는 문자가 동일하고 다만 'Alfa Laval' 부분과 'Aalborg' 부분 사이에 마침표가 삽입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차이 역시 실사용상표 3은 물론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사용상표 1 역시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3) 실사용표장 1, 3은 알파 라발 올보르그 에이에스의 상호에서 기업 형태를 나타내는 'A/S' 부분이 제외된 것이어서 알파 라발 올보르그 에이에스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점, 하나의 표장을 표시한 것이 상호를 표시한 것인 동시에 출처표시로서 상표를 표시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실사용표장 1, 3이 알파 라발 올보르그 에이에스의 상호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사용표장 1, 3이 출처표시를 위하여 상표로도 사용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알파 라발 올보르그 에이에스가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실사용표장 1, 3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등록취소 심판에서의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사용상표 1, 3은 알파 라발 올보르그 에이에스의 상호를 단순히 표시한 것이어서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1수입에 관하여 '컨트롤 패널' 등의 상품이, 제4수입에 관하여 '공통 패널' 등의 상품이 모두 '부산항'에서 양하되어 국내에서 각 수입사인 삼성중공업 및 STX 해양조선이 이를 인수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그와 관련되어 제출된 물품인도통지서 등인 원고 측 또는 제3자인 사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 및 영상과 작성일자 등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3자가 작성한 선하증권 기재내용이 화물인도통지서 및 송장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점, 선하증권에 기재된 신용장(L/C) 번호가 송장에 기재된 신용장 번호와 일치하는 점, 화물인도통지서와 송장에 기재된 각 선박건조번호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호증들은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제1수입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된 상품에는 상품태그 'L1'에 해당하는 컨트롤 패널 1개 및 상품태그 '3L2'에 해당하는 컨트롤 패널 1개가 포함되고, 제4수입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된 상품에는 상품태그 'L1'에 해당하는 파워 패널 1개 및 상품태그 'L7'에 해당하는 공통 패널 1개가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의 상품태그가 C(=Boiler), F(=Burner)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여기서 상품태그 L(=Control Panel)은 전체 보일러 시스템 중 컨트롤 패널 및 'Printer', 'Keyboard' 등 컨트롤 패널에 부가되는 물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통 패널은 1개 타입 이상의 보일러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어떤 공통 기능을 가지는 여러 보일러 사이에 중복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역시 원고 상품태그 분류상 컨트롤 패널(L)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제품들은 모두 전체 보일러 시스템에서 보일러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1수입 및 제4수입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된 위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보일러 제어기구(boiler control instruments)'와 동일한 상품이라 할 것이다.

키워드: 상표, 등록취소, ALFA LAVAL AALBORG, 보일러 제어기구, 지정상품의 거래통념상 동일성 인정, 표장의 거래통념상 동일성 인정, 불사용취소 사건에서 상표 사용의사, 상표와 상호, 통상사용권자 인정

사건번호	2022 허 3502	사건명	등록정정(특)
심판번호	2021 정 136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일체형 면도날 및 이를 이용한 면도 기 카트리지
선고일	2022. 10. 27.	선고결과	기각

1 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1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정정심판청구가 특허법 제 136 조 제 5 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정정심판청구 전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특허발명 청구항 1, 4, 8, 14항을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나, 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2021허5679 사건 참조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일체형 면도날, 면도기 카트리지, 정정청구 적법, 명세서 기재불비 부정, 진보성 부정, 수치한정 발명, 면도기, 절삭 부재